



문서번호	노인청소년과-6840
결재일자	2015.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노인시설팀장	노인청소년과장	주민생활국장	
김소연	정춘우	강종식	03/10 박기웅	
협조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장기요양,재가간병서비스)

2015. 3.



성 동 구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장기요양,재가간병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재가간병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하고자 함

I 관련 근거

-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시 어르신복지과-1500, '15.1.26)

II 추진 방향

-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복지수요에 맞는 요양 및 재가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족부양 부담완화 및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 차단

III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로 장기요양 및 재가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구 분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충족하는 자로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자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180%이하이면서 일시적인 질병으로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월 347,690원)	연간 최대 30시간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IV 추진계획

구 분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추진목표 (시 전체 기준)	100명 이상	150명 이상

< '15년 달라지는 사항 ('14년 대비)>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사업 중 방문요양에 지원한도액 설정(월 30만 원)
 - '14년도 7월 이후, 4-5등급 신설로 인하여 등급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감이 과도하게 지원될 우려 있어, 시설급여 및 주야간보호 지원금액과 형평이 맞게 한도액(월 30만 원)을 설정하였음.
- 재가어르신간병서비스사업 지원단가 상향 조정(9,800원 -> 10,000원)
 -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급단가는 동일하며, 서비스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타 기관 인력 활용 시 상해보험 가입비용 등 관리운영비 반영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운영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1분기 사업 운영 후 수행기관 운영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선정 대상자 : 100명(시 전체)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며,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는 자로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자
- 최근('13.1월~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14년 기준)로 수급권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자치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부적합 판정 확인

☞ 생계가 어려운 자는 선(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급자가 아닐 경우 후(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유도 함.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대상임.

○ 지원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급여의 20%가 본인부담금이며, 재가장기요양은 장기요양급여 15%가 본인부담금임

○ 지원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4개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공생포함),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비급여비는 제외 함

- 노인요양시설 : 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주야간보호 : 최대 1일 8시간, 월 25일간에 한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방문요양 : 최대 1일 4시간까지 이용한 본인부담금 지원(월 30만 원 한도)
- 방문목욕 : 최대 월 4회 이용한 본인부담금 지원

- 단,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는 1개 서비스에 한 함. 즉, 2개 이상(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1개 서비스만 지원 함

○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혜택을 받은 자(기초생활수급자)

※ 즉,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기타 의료수급권자도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상에 해당 함

○ 지급시기 : 지원 대상자 신청일로부터 소급지급

선정기준

○ 수급권자(대상자)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저생계비 150%	926,000	1,577,000	2,040,000	2,502,000	2,965,000	3,428,000	3,891,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63,000원씩 증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재산금액 기준 및 소득기준에 **동시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동일)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137,456	4,939,925	5,510,909	6,081,895	6,652,881	7,223,865	7,794,851
재산기준	5억원						

* 부양의무자 8인 이상 가구는 1인가구 증가시 마다 558,148씩 증가 함

* 단, 혼인한 자녀가 장기요양 대상자이고 부모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동 기준 적용시 부모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만 반영

* 부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서 인정하는 부채만 해당.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 여부를 확인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 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여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1-5등급) 1부

본인부담금 지원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과 동일 적용)

○ **요양시설 본인부담금 지원 내역**

(단위 : 원)

①시설급여 기준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인 1일 추가	56,080	52,040	47,990	51,290	47,590	43,870
총금액/월	1,682,400	1,561,200	1,439,700	1,538,700	1,427,700	1,316,100
본인부담금/월	336,480	312,240	287,940	307,740	285,540	263,220

※ 단, 기타 의료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20%중 10%만 지원함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지원 내역**

(단위 : 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구분	시간분류	금액(원)	본인부담 지원금(원)	구분	이용분류	금액(원)	본인부담 지원금(원)
1일 기준	30분이상	11,390	1,709	1회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72,540	10,890
	60분이상	17,490	2,624				
	90분이상	23,450	3,518				
	120분이상	29,610	4,44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65,410	9,820
	150분이상	33,650	5,048				
	180분이상	37,200	5,580				
	210분이상	40,470	6,07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6,130
	240분이상	43,500	6,525				

※ 단,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20%중 7.5%만 지원함

○ **노인주·야간보호(이용일 최대 지원일 수는 25일 임)**

- 최대 1일 8~10시간 미만, 월 25일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단위 : 원)

주야간보호 등급별 지원내역							비고
분 류	급 여	이용일수					
		20일 기준		25일 기준			
		총금액	본인부담금	총금액	본인부담금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25,990	519,800	77,970	649,750	97,463	
	2등급	24,060	481,200	72,180	601,500	90,225	
	3등급	22,210	444,200	66,630	555,250	83,288	
	4등급	21,200	424,000	63,600	530,000	79,500	
	5등급	20,190	403,800	60,570	504,750	75,713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34,840	696,800	104,520	871,000	130,650	
	2등급	32,280	645,600	96,840	807,000	121,050	
	3등급	29,800	596,000	89,400	745,000	111,750	
	4등급	28,780	575,600	86,340	719,500	107,925	
	5등급	27,760	555,200	83,280	694,000	104,100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43,350	867,000	130,050	1,083,750	162,563	
	2등급	40,150	803,000	120,450	1,003,750	150,563	
	3등급	37,070	741,400	111,210	926,750	139,013	
	4등급	36,060	721,200	108,180	901,500	135,225	
	5등급	35,030	700,600	105,090	875,750	131,363	

※ 단,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15%중 7.5%만 지원함

소요예산 : 275,104천 원(시 예산)

2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개요

○ 선정 대상자 : 150명

-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180%이하이며,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간병서비스 연 최대시간 30시간 1회 지원

- 주요서비스 : 식사서면도움, 채워변경,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구강관리, 목욕보조 등

- 이용료 : 무료 (100% 지원)

※ 단, 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전액 자부담하여야 함.

- 간병서비스는 돌봄기본서비스 등 다른 돌봄서비스와 달리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 서비스 지원은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최대 3주안에 서비스를 종료하여야 함.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어르신돌봄통합센터 포함)

- 사업내용 : 수급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 보조금 청구, 사업홍보

- 자치구로부터 통보받은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요양보호사는 별도 채용 또는 수행기관 내 활동 중인 단시간 근로자 활용가능하며,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예산 편성 운영

-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종료 후 즉시 수행기관에 수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퇴사 시 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철저(근로계약 체결 시 각서 징구)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식은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서식을 준용

-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재가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사례관리 등 공유

- 1분기 사업 운영 후 수행기관 운영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 이용자 만족도는 이용시간, 서비스내용, 서비스 품질, 비라는 사항 등 중점 조사

○ 보조금 지원 : 지원단가 시간당 10,000원

- 요양보호사 인건비 : 시간당 단가(10,000원)중 7,425원 이상을 요양보호사의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

▶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수급과 처우를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에 준하여 단가 책정

- 관리 운영비 : 시간당 단가(10,000원)중 2,575원 미만에서 관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요양보호사 퇴직금 포함한 관리운영비)

▶ 타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상해 및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한 후 운영

○ 지급시기 : 지원 대상자 신청일로부터 소급지급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80% 이하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포함)

* 최저생계비의 180%이하 근접한 소득수준 및 조사방법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로 판단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저생계비 180%	1,111,000	1,892,000	2,447,000	3,003,000	3,559,000	4,114,000	4,670,000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후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신청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반드시 입원하여야만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외래 진료의 경우 소견서만으로도 가능함

소요예산 : 45,000천 원(시 예산)

V

행정 사항

☐ 서울시·자치구 및 서비스수행기관 협조체계 유지



☐ 사업 홍보 강화

- 「2015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 사업 홍보
 -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를 활용한 홍보 강화
 - 의료기관 중심의 어르신 다중이용시설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의료기관 등)에 홍보

붙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신청서식 1부. 끝.